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12.03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.11.17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0.11.18.
- 다. 상정일자 :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(2010.12. 3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 정 호 주민생활지원과장

가. 제안이유

타사업과 명칭이 유사하여 사업추진시 혼란이 있고, 사업내용과 부합되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명칭 변경(안 제3조제1항)
 - “긴급구호비 지원”을 “특별생계비 지원”으로 변경하고자 함.
- 2)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문 정비 (안 제3조, 4조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본 조례안은 기존 위기가구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해 온 긴급구호사업이 보건복지부, 서울시의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의 추가시행으로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등 조례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“긴급구호비 지원”을 “특별생계비 지원”으로 하고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8. 기타 : 없음